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6 - 261호
-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

나. 관련공문

- 경남도 세정과-1393(2006.02.08) 및 세정과-2355(2006.03.07)
군세조례 표준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정착을 위하여 지방세의 경우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도입과 지방세 개정과 관련한 시.군세 조례 정비안 합동직무 결과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불합리한 고성군세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세 및 군세의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주택분 재산세 납기를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과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에 전액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법령과 중복되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 고성군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5조의 담배소비세 세율변경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와 저가담배에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조항 삭제로 인한 세수 결함은 없는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없음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6. 6. 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